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이주자택지 공급공고

- ※ 금회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분(이주자주택 및 이주정착금을 받은 자 제외)**에 한하여 분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실수요자 신청 불가)**
- ※ **분양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공고문의 내용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문 등에 기재된 지구단위계획 등의 관련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23호, 2024.11.20.)로 승인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기준이며, **토지 이용계획이 일부 변동될 소지가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토지

용도	도면표시 (블록명)	필지수	면적 (㎡)	공급가격 (원)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가구수	공급방법
점포겸용 단독주택	R2	45	248~307	470,347,500 ~ 690,190,500	60% 이하	200% 이하	4층 이하 (필로티포함)	5가구 이하	순위별 전산추첨

- ※ 필지별 세부내역 및 관련도면은 인천도시공사(iH공사) 홈페이지내(<https://www.ih.co.kr>) [iH알림/공지사항]에서 해당 공급공고문의 첨부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가격 : 기준면적(265㎡) 이하 면적은 이주자택지 공급단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차감한 금액 (1,961,504원/㎡))로서 필지별 위치 등에 따른 격차율 반영, 기준면적(265㎡) 초과면적은 감정가격으로 산정합니다.
- ※ 이주자택지 중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는 자는 생활대책 수립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다른 생활대책 수립 대상자 요건 충족시 포함)

2 신청자격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받은 자 (일반 실수요자 신청 불가)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및 관련서류를 이주자택지 신청접수 전인 **2026.09.14.(월) 17:00까지**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 토지판매팀(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14번길 42, 본관1층)으로 방문·제출하여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받아 공급대상자 변경(상속) 완료를 통지받으시면 변경된 공급대상자 명의로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의된 상속인 명의로 신청 및 계약
-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한 내에 공급대상자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

상속대상자 중 대표자가 대리하여 피상속인(사망자) 명의로 신청접수는 가능하나, 계약체결 전까지는 상속 재산 분할협의서 및 관련서류를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로 제출하시어 공급대상자 변경을 완료 한 후 상속자 명의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전까지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추첨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상속절차를 밟으 시어 계약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공급일정 및 장소 (※ 인터넷 접수만 가능)

구 분	일 정		장 소
1순위	신청접수	'26.9.14(월) 10:00 ~ '26.9.15(화) 17:00	iH 보상대상자추첨시스템(https://land.ih.co.kr)
	필지추첨 (전산추첨)	'26.9.16(수) 14:00	인천도시공사 본관 지하1층 랜선회의실
	추첨결과게시	'26.9.16(수) 16:00	iH 보상대상자추첨시스템(https://land.ih.co.kr)
2순위	신청접수	'26.9.17(목) 10:00 ~ '26.9.18(금) 17:00	iH 보상대상자추첨시스템(https://land.ih.co.kr)
	필지추첨 (전산추첨)	'26.9.21(월) 14:00	인천도시공사 본관 지하1층 랜선회의실
	추첨결과게시	'26.9.21(월) 16:00	iH 보상대상자추첨시스템(https://land.ih.co.kr)
계약 체결	'26.10.12(월) ~ '26.10.16(금) 10:00 ~ 16:00 (평일 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 대상토지별 계약일정이 지정되므로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를 반드시 확인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본관1층)

※ 공급대상 토지별 계약체결 일정이 상이하므로 『5.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H 보상대상자추첨시스템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이주자택지 등 토지의 추첨분양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인천도시공사 토지공급정보 사이트(<https://land.ih.co.kr>)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에는 iH 홈페이지내(<https://www.ih.co.kr>) [iH알림/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상기 일정은 iH 보상대상자추첨시스템 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기한 내 미신청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신청자(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공사 이전(인천시 남동구 → 인천시 서해구)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4 신청접수 및 공급토지 결정방법

① 신청접수

- ① iH 부동산공급정보사이트 접속(<https://land.ih.co.kr>) ⇨ ② 부동산공급정보사이트 우측 상단 보상대상자추첨 시스템 접속 ⇨ ③ 휴대폰인증(공급대상자) ⇨ ④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⑤ 사업지구 선택(인천검암역세권) ⇨ ⑥ 추첨신청서 작성(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동의) 및 제출 ⇨ ⑦ 결과출력(접수결과 출력)

※ 자세한 방법은 토지 추첨 프로그램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신청접수는 『iH 보상대상자추첨시스템(<https://land.ih.co.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 ※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은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에 방문하는 경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공급대상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야 하며, 방문을 통한 인터넷 신청시에도 입력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공급대상자 본인의 인터넷 신청 및 방문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이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에 방문가능 하며, 본인을 대리하여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을 통한 인터넷 신청시에도 입력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공급대상자)에게 있습니다.
 - * 대리인 방문시 구비서류 : 위임장(본인 인감도장 날인 / 붙임 양식 참조), 위임용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 ② 신청접수시 공인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의 휴대폰인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접수시 신청예약금 없음)
- ③ **신청접수는 필지 지정 없이 신청하고,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별 공급필지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 ④ 신청기간 종료와 동시에 『iH 보상대상자추첨시스템』도 마감되므로 **반드시 신청기한 내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⑤ **공급대상자가 ㉠신청접수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모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⑥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시 명의는 반드시 공급대상자 명의로 동일하여야 합니다.**
- ⑦ 신청기간이 완료되면 신청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⑧ 신청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접수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유시간을 갖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⑨ 【모바일 신청】 모바일로 접속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모바일 신청은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바일 신청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신청접수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공급토지 결정방법 : iH 보상대상자추첨시스템을 통한 순위별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필지위치 결정

- ① 대상자별 공급필지의 추첨은 『iH 보상대상자추첨시스템』을 통한 전산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추첨에 필요한 5개의 난수는 참관자 중 5명이 수기추첨으로 선정하며, 참관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 책임 하에 추첨이 진행됩니다.
- ② 추첨시 참관을 원할 경우 추첨일시를 확인하시어 **공급대상자 본인의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여 인천도시공사 본관 지하1층 랜선회의실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청자 본인(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 ※ 대리인 방문시 구비서류 : 위임장(본인 인감도장 날인 / 붙임 양식 참조), 위임용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 ③ **필지 추첨 이후 대상자 상호 간 필지교환, 미당첨 및 미추첨 토지로의 필지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④ 추첨결과는 iH 홈페이지내 [iH알림/공지사항] 및 『iH 보상대상자추첨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매뉴얼 참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① 공급토지별 계약일정 : '26.10.12.(월) ~ '26.10.16.(금) / 10:00~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계약체결 일정		
대상토지	계약기간	장소
R2-1 블록	'26.10.12.(월)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 토지판매팀 [IH 본관 1층] 10:00~16: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주소: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본관1층
R2-2 블록	'26.10.13.(화)	
R2-3 블록	'26.10.14.(수)	
R2-4 블록	'26.10.15.(목)	
R2-5 블록	'26.10.16.(금)	

- ※ 계약체결 준비 및 대기시간 지연 방지를 위하여 해당 계약기간에 대상토지별 지정된 일정으로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 ※ 대상토지별 계약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체 계약종료일인 **2026.10.16.(금) 16:00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공사 이전(인천 남동구 → 인천 서해구) 일정에 따라 장소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② 계약체결 구비서류

구비서류	① 계약금 납입영수증(토지대금의 10%) ② 주민등록등본 1부(계약자 주민번호 전부 표시) ③ (본인계약시) 신분증, 도장 (대리계약시) 위임장(본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④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1부(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각종 공부는 공급공고일(2026.9.4.)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권지역의 토지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지분거래는 금액 무관 전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계약체결시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급대상자가 계약기한 내 계약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이주자택지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이주자택지 및 주택으로 공급은 불가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금 납부

계약보증금	필지별 가상계좌 → 결과게시 시 홈페이지(https://www.ih.co.kr) [IH알림/공지사항]에 안내
납부계좌	※ 계약금은 반드시 해당 필지 가상계좌에 계약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6

대금납부조건

① 대금납부조건(3년 무이자 분할납부_중도금 거치기간 1년)

계약금	거치기간 1년	1회차 중도금	2회차 중도금	3회차 중도금	잔금
계약체결시	12개월	18개월 후	24개월 후	30개월 후	36개월 후
10%	-	22.5%	22.5%	22.5%	22.5%

- ① 중도금 및 잔금은 균등 분할하되 십만원 미만의 금액은 1회차 중도금에 포함됩니다.
- ② **매매대금 납부에 대한 별도의 고지는 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서상의 납부약정일에 맞춰 매매계약서상 납부 계좌에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선납할인, 지연손해금, 이자산정 등

- ① 선납할인 : 약정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현행 연 5.0%, 추후 변동가능)
- ② 지연손해금(연체이자)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률(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이 부과됩니다.(현행 연 7.5%, 추후 변동가능)
※ 납부약정일이 휴일인 경우 반드시 그 다음 일자까지 수납을 하여야만 지연손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③ 이자산정 :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④ 상기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연체이자율) 등 각종 이자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 이자율로 향후 인천도시공사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하여 부리합니다.(공사 홈페이지 게시하며 별도 개별안내 없음)
- ⑤ 매수자가 납부하는 토지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납부하기로 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할부금부터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에 의합니다.

③ 중도금 대출제도 안내

- ① 인천도시공사는 공사와 대출협약이 체결된 은행에 한하여 대출관련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조건은 각 은행별 여신규정 및 신청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먼저 대출협약 은행과 개별적으로 사전 협의하신 후 대출추천서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협약 체결된 은행에 대한 대출추천서 발급은 **대출기관과의 협약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총 토지매매대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연체가 없는 경우 가능함**) 또한 추천서가 발급되더라도 해당 은행 자체의 대출조건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② **대출시 은행 대출이자 발생**하며, **대출가능여부 및 조건 등은 은행별 여신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7 토지사용, 면적정산 및 소유권 이전

토지사용가능시기

2026년 6월 30일 이후

- ① (토지사용승낙)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 각종 인허가 변경 및 조성공사 진행 상황 등 토지사용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공사의 동의 하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우리공사가 제시한 조건사항 및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점을 수인하여야 합니다.
※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지구 내 예측 불가능한 매립폐기물 또는 조성공사 진행상황,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조성공사 및 사업준공 일정이 변경(연장)될 경우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등기 시기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착공관련 사항으로 기반시설사용 가능시기 및 등기이전 가능시기와는 다릅니다.
- ② (면적정산) 분양면적은 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지적확정측량 완료 이후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필지의 선형변경 및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정산 기준일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며, 계약

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되,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내규에 의합니다.

* 기준면적(265㎡) 이하 면적 부분 : 계약체결당시의 이주자택지공급단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필지별 위치 등에 따른 격차율 반영)로 정산

* 기준면적(265㎡) 초과 면적 부분 : 계약체결당시의 감정가격으로 정산

- ③ (소유권이전)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 완료 후 가능하며, 공사 및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토지사용가능시기, 면적정산기준일 및 소유권이전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준공일은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고 수용하여야 합니다.

- ④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및 향후 건축을 위한 측량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⑤ 사업이 준공되어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별도로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으며,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금완납 후 소유권 이전하여야 합니다.

- ⑥ 사용승낙서 또는 소유권 이전서류 발급 요청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매매대금 완납예정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공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명의변경 사항

명의변경 시작일

2026.12.1(화) 10:00부터 가능 (사전연락후 방문)

※ 방문일정 등 유선협의(032-260-5604)

- ①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원칙적으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변동)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가 제한되며, 이에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사전동의를 얻고 부동산실거래신고 후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금번 이주자택지의 경우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따라 **최초 매수인**은 계약체결 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우리공사의 동의를 거쳐 가격제한 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② **최초 1회 명의변경 이후에는 동법 시행령 제25조 10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향후 정부정책 또는 법령, 관련 조례 등의 제·개정 시 변경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10의2」

10의2.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단독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 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전매하는 경우
- 나.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무·생업·취학·결혼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같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마.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바. 공급받은 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사.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
- 아.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실신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용지에서 주택건설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 상기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내용은 관련 법 개정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명의변경 시 연체원리금을 전액 해소하여야 하며, 대금완납 또는 토지사용승낙 이후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 ④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한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⑤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 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전매자(매도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고, 관할 등기소에서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⑥ 전매 당사자들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민·형사상 처벌, 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계약체결 시와 명의변경 전 전매행위 제한사항준수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 전매관련 유의사항

- **[다운계약서 작성 금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32조의3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해당 택지의 공급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같은 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택지를 전매한 자와 전매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전매 시 실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최초계약) 및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거래계약(전매계약)도 실거래신고 대상이며,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회 인천도시공사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신고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단독 수행합니다. 다만, 추후 명의변경(매매원인)이 발생할 경우 사인간의 거래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의 정책 또는 관련 조례, 법령 등의 제·개정시 변경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부동산 신고필증 등 확인을 거쳐 사업시행자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9

주요세금 및 신고사항

- ① 지방세법에 따라 매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하므로 토지대금(계약금 및 각 중도금, 잔금) 납부시마다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등 관계 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인천광역시 서해구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수용확인원 발급문의 : 인천도시공사 보상처 보상2팀(전화번호 032-260-5515)
- ③ 토지분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며, 최종 잔금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부터는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날 이후 우리공사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최종 약정일 경과 시에는 매도자인 우리 공사(인천도시공사)가 먼저

대납하고, 이를 매수자로부터 공사가 수납하게 됩니다.

※ 상기 매수자 부담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 미이전 등의 사유로 과세기관이 매수자에게 직접 부과하지 않고 공사에 부과할 경우, 공사가 먼저 대납하고 이를 매수자에게 청구하게 되며, 소유권이전은 매수자가 공사에 대납재산세를 납부한 후 가능합니다.

④ 토지대금완납일 이후 매입토지의 관리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⑤ 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매매)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며 **계약체결일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 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등기 시 등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필요).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자인 우리공사와 토지매수자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하며 토지매수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우리공사는 인지세 부담액 1/2를 토지매수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계약서 작성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가능

※ **주요세금 안내는 매수자 편의를 위하여 공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용도이며, 세법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매수자 본인이 관계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문의 등을 통해 반드시 최종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신청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급신청 및 계약관련

- ① 공급신청자는 공급신청 전에 공급공고문, 인터넷이용약관, 매입신청 유의사항에 대한 종람 확인서, 기타 안내자료, 지구계획 승인내용(변경예정 포함), 지구단위계획(변경예정 포함),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교육), 공사관계도면(공사계획평면도 등), 건축규제 사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원), 에너지사용계획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 인허가 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하여야 하므로 공급신청 전에 현지답사 및 건축규제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공급신청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② 건축 시에는 해당 지구의 각종 영향평가,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 및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별도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규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공고일 이후에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 ③ 공급예정금액은 지구단위계획, 암(巖) 및 법면발생,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계약요인이 감안 되어 평가되었음에 유의하시고,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대상토지의 장애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④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건축물이 「도로교통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한 제 대책이 수립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 개발은 법적 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법률내용을 확인·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⑥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계약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또한 고지된 토지사용시기는 예측이 어려운 공사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지연될 수 있음을 수 인하여야 합니다.

- ⑦ 지구 내 교통체계는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해당 지구의 에너지 사용계획이행계획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등 인허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⑧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불허되는 건축물의 용도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및 결정도면을 참고하거나 지자체(도시계획과, 건축과 등)에 반드시 문의·확인하신 후 매입신청 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⑨ 매수인은 매입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 토질상태를 현지답사와 관계도면을 통해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부지의 경사정도, 암반의 제거, 법면상태 등과 관련된 처리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⑩ 매입토지에 매립폐기물(또는 오염토양)이 발견될 경우 매수인은 발견 즉시 현장을 보전한 상태에서 건설사업관리단에 알리고 처리방법 및 처리비용 정산방법에 대하여 인천도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협의한 이후 매립폐기물(또는 오염토양)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공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또는 오염토양)을 옮기거나 외부로의 반출, 정화작업 등 자체적인 처리를 하는 경우 우리 공사의 처리비용 부담이나 협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⑪ 매수인은 계약체결 전에 사전 현장답사를 통해 해당 필지 주변 환경 및 현재 상·하수도 시설물 등의 시공 상태를 인지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노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소화전, 표지판 등)이 있는 경우 위치 및 필지 조성 구매 등은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 문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⑫ 공급대상토지는 본 공급공고문, 공사내규,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용지(택지)공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공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날인하기로 합니다.
- ⑬ 2인(법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⑭ 매수인(신청인)은「본 공급공고문 및 공급공고에 첨부된 부속서류」의 내용을 숙지 및 수인하는 조건으로 공급 신청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 및 「용지매매계약서」 및 「매입신청 유의사항에 대한 종람확인서」등에 언급이 없는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인천도시공사 내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 및 인허가 유의사항

※ 매수자께서는 향후 해당 필지 사용에 따른 건축허가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에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매수인은 주택건설사업 착수 시 주민 입주예정시기 및 건축공사 등 제반사항을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구 내 학교는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 추진계획 등에 따라 입주예정시기와 개교 시기는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② 지구 내 가공송전선로(철탑) 지중화를 시행 중으로 지중송전선로가 상업시설용지 북측 도로 내 매설 예정이며, 공사중 임시 철탑을 설치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 ③ 토지사용 가능 시기는 인허가, 문화재 시·발굴 조사, 공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④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공급 토지 면적 증감 및 주변 토지이용계획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⑤ 관련계획 확인 의무
 -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 인천검암역세권 제영향평가서(환경, 교통, 재해, 교육) 및 에너지사용계획
- 국가지정 문화재 및 매장문화재에 관한 관련계획,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준 확인
- 기타 상위법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등 관련계획 및 규정

※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지구계획 등의 변경사항 및 이에 따른 인허가 조건사항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 ⑥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공사의 단지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환경관련 문제 및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 중 사용하는 도로의 유지 관리(살수차 운행 등)를 하여야 합니다.
- ⑦ 매수인은 착공 전 부지경계 및 계획고를 측량하여 우리공사의 조성계획과 이상이 없음을 상호 확인하고 단지경계 변곡점에 경계구분을 위한 표식점을 설치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추후 측량의 오류로 인한 건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공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 ⑧ 매수인은 건축공사 시 건축법 상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야 하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우리공사가 관계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 제 영향평가와 지구계획 승인 조건사항 중 매수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⑨ 개별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결과 또는 사업계획에 따라 진출입구 개설에 따른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시 매수인 부담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단지조성공사 시공사가 설치한 도시기반시설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매수인 부담으로 설치 및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⑩ 일부 필지 전면에 도시기반시설물(교통안전시설, 전기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⑪ 매수인은 매수부지 내 시설과 우리공사가 시행중인 도시기반시설(도로, 우수, 오수, 상수 등)의 연결위치 및 연결부 상세도를 시공 전 단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에 제출하고 추후 도시기반시설의 연결에 관한 제반문제 사항을 사전 해소하기 위하여 시공 전 단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하며, 연결부 시공 시 매수인은 단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의 입회를 요청하여 입회하에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⑫ 도시기반시설(도로, 우수, 상수, 오수(폐수포함) 등) 연결사용은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단지조성공사 도시기반시설 설치 완료 전까지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 ⑬ 단지조성공사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지구 내 도시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도시기반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⑭ 단지 내 도시기반시설 설치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매수부지를 인계함에 따라 추후 단지조성공사 시공사가 각종 도시기반시설(하수도, 경계석, 포장 등) 시공을 위해 필요한 매수부지 사용에 대하여 매수인은 단지조성공사 시공사가 매수인의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단지조성공사 시공사는 사용 후 원상 복구하여 매수인에게 인계토록 합니다.
- ⑮ 매수인은 공사 시 소요되는 전력공급용 전주를 매수인 부지 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인접필지 건축시공사와 공동 사용을 원칙으로 별도의 부지 사용승낙을 우리공사에 득하여야 하고, 사용 시 매수인의 책임 하에 유지관리토록 하되,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단지조성공사 공사시행의 사유로 인하여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전하여야 하며, 사용 후 단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에 반드시 철거 확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⑯ 우수, 오수, 상수도 관로 등 세부 설계 시 단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와 사전 협의 후 계획하여야 하며, 전기·통신·지역난방·도시가스·유선방송 등 타 기관 시행시설은 업체별로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⑰ 건축공사 시행 중 단지조성공사 등 공공사업과 간섭이 발생할 경우 공공사업이 우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간섭사항 발생 전 단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⑱ 매수인은 매수부지 경계웬스 설치 시 부지주변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1m 이상의 여유 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⑲ 매수부지 출입문은 단지조성공사 시공사와 협의하여 주변 교통 및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⑳ 매수인의 공사용도로는 단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도로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조성공사 시공사의 지하 매설물 및 포장공사 시행 등으로 인하여 공사용 도로가 일시 폐쇄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㉑ 매수인이 주 출입도로로 이용하는 인근 공용도로에 발생하는 환경민원, 도로파손 등은 매수인이 적극 처리하여야 합니다.
- ㉒ 매수부지 공사 시 레미콘차량 및 자재 운반차량에서 나오는 건설폐재류나 지정폐기물 등은 매수인의 책임 하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단지 내 임의장소에 방치하거나 몰래 투기해서는 안되며, 특히 매수부지내의 현장사무실, 가설화장실 등의 오수는 관련법에 의해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㉓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건축폐기물은 매수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 ㉔ 매수 부지 외 토지에는 가설건축물 및 컨테이너, 분양을 위한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 자재 적치, 차량 등의 주차는 절대 불가하며, 향후 건축허가 조건 위반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㉕ 매수인은 공사용도로 및 매수부지 주출입구 주변에 필요한 안전 및 환경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하고 안전유도원 등 관리인력을 배치하여 안전, 환경 및 민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합니다.
- ㉖ 매수인의 필요 시 공사용 도로의 개설 및 이설,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표층 포장 전 기층상태의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 사용할 경우 파손된 구간에 대한 복구비용 예치 후 공사용 도로사용이 가능하고, 예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단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용도로의 이용에 따라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수 등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㉗ 매수인의 공사시행과 관련 차량운행, 소음 및 분진 발생으로 인한 안전, 환경, 민원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적극 해결해야 하며, 민원발생 사안에 따라 단지조성공사 시공사와 매수인이 공동대처를 해야 할 경우 상호 협조하여 공동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㉘ 매수인은 관계기관의 환경관련 인허가 조건 이행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하며, 매수부지 진·출입로에 우리공사의 포장공사가 완료된 시점에는 건축부지 내의 토사가 포장도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매수인과 인접필지 건축시공사는 상호 협의하여 세륜세차시설을 공동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은 단지조성공사 시공사와 협의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㉙ 공사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은 동 부지 매수인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우기 시 단지 내 토사가 단지 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시설(토사유출방지막,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㉚ 건축부지와 도로 경계부위의 지하매설물은 상대적인 부등침하로 인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㉛ 건축공사 지하 터파기로 인해 인접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면 주변 지반이 침하되어 인접한 건축물 및 도로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하수위가 높은 부지는 차수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 ㉜ 건축공사 지하 터파기 시 인접도로 및 매설된 도시기반시설의 침하 및 변형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전 공사시행 방안 등에 대해 단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여야 하며, 어스앵커 등 인접도로 및 녹지 등을 침범할 수 있는 공법은 불가합니다.
- ㉝ 단지조성공사, 유관기관 기반시설(전기, 통신, 가스 등) 공사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지구 내 공동시설(공사용가도 관리, 세륜·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및 노면청소차 운행 등 기타 공통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해 매수인은 단지조성공사 시공사의 주관 하에 구성되는 협의체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㉞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부지 인계·인수 시 부지양도 및 병행공사에 다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인계·인수 협약서」를 체결한 후 건축 착공하여야 하며, 협약체결 전 임의 착공은 불가하고, 협약서 내용

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③5 건축공사 등 공사 시행 간 단지조성공사 도시기반시설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제품 이상으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단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공사 준공검사 신청 전 도시기반시설 원상복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원상복구 확인서 미발급시 준공검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③6 건축공사 시에는 우리공사 공사관리관, 단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의 지시·통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7 매수인은 해당 토지매입 및 향후 분양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확인·준수해야 하며, 우리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이외에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 등에 의거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8 건축허가 과정에서 가감속 차로 설치, 차로 및 완충녹지 등 기부채납으로 인해 대지면적이 감소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관련 공사비용 청구 및 대지면적 감소에 따른 금액정산을 우리공사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
- ③9 우리공사에서 도시기반시설 공사시행으로 부득이 매수인의 부지를 침범할 경우는 상호 협의 후 공사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④0 매수인은 건축공사로 인해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해 운전자 앞쪽 유리에 현장명과 연번, 운전자 연락처를 기록한 식별표(가로 40cm×세로 25cm 크기에 가로 30cm×세로 15cm 크기의 흑색 글씨)를 차량에 표식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④1 단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는 현장 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주행속도 미준수 등 안전운행을 하지 않거나 공사관계자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차량에 대해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는 현장 내로 통행을 금지토록 매수인에게 요청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 ④2 매수인은 매수부지 외 토지에 자재 적치, 가건물 설치, 토사무단적치 등의 행위를 우리공사 동의 없이 무단으로 할 수 없으며, 토지사용승낙 받은 매수부지 외 토지에서 레미콘 차량의 세척 등의 환경유해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사차량은 매수인의 통제 하에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④3 단지 내 배수시설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매수부지를 인계함에 따라 우기 시 상호 피해방지를 위하여 단지조성공사 시공사는 배수계획을 매수인에게 통보할 것이며, 매수인은 단지조성공사 시공사의 배수계획에 맞추어 부지 내 배수로 정비, 저류지, 침사지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반드시 단지조성공사 시공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유출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④4 공사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분담 등을 위해 본 공고문을 바탕으로 단지조성공사 시공사와 매수인은 관리협약을 실 착공 전까지 별도로 협의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협약의 체결 이후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단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는 매수인에게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조건 없이 수용하여야 합니다.
- ④5 매수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수인의 비용 및 노력부담으로 안전시설물의 설치, 안전유도요원 배치 등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단지조성공사 시공사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매수부지 내에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매수인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④6 단지조성공사 시공사가 시공한 시설물(포장, 지하매설물 등)을 매수인이 공사 및 기타의 사유로 파손하였을 경우 또는 사용중 변형이 발생되었을 경우 매수인은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은 배상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용지에 관련한 각종 도면 및 지구단위계획 등 자료는 인천도시공사 토지공급정보(<http://land.ih.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매입신청, 추첨, 계약체결		마케팅처 토지판매팀	032-260-5604
인 허 가	일 반	도시개발처 도시개발2팀	032-260-5415
	문화재	스마트기술처 스마트기술팀	032-260-5853
	환 경	스마트기술처 조경환경팀	032-260-5775
조성공사		도시개발처 도시개발2팀	032-260-5416

2026. 9. 4.

인천도시공사 사장